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향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16일

발 의 자 : 권영애, 김춘례,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윤만환,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에 의거,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 운영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게 함(제16조의2)
- 나. 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과 내실을 기함(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5. 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전검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0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u>실시할 수 있다.</u></p>	<p><u>제16조의2(사전검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20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 ----- ----- ----- ----- <u>실시하여야 한다.</u></p>